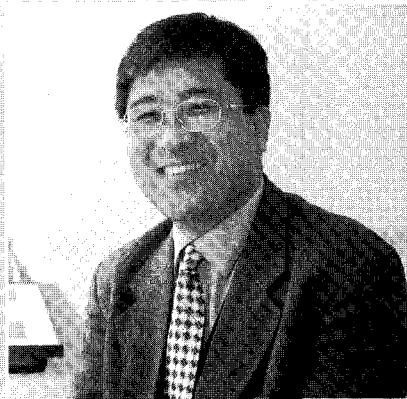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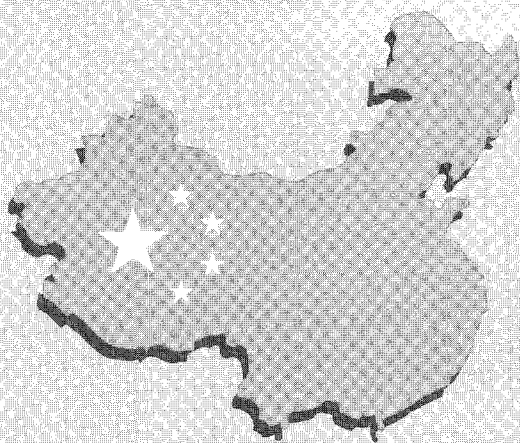


중국 외 양계업



곽춘욱 (주)건지 대표이사

중화인민공화국 동물 방역법

오랜 동안 중국에서 일하며 중국의 동물방역에 대해 많이 궁금했었다. 어떻게 보면 각종 전염성질환이 끊일 수가 없는 현실은 중국이 넓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이해가 된다. 더구나 아직도 도로가에서, 또는 식당에서 마구잡이로 도살되는 현장을 보면 이러한 질병을 쉽게 종결하지 못하게 하는 주범인지도 모르겠다. 더구나 양국인의 통행량이 갈수록 늘고 있고 특히 인접국가라는 차원에서 중국의 동물방역에 대한 법을 고찰해보는 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생각에서 중국의 동물검역법을 소개한다.

이 법은 1997년 7월 3일 제8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6차 회의에서 통과되었으며, 1997년 7월 3일 중화인민공화국주석령 제87호 선포,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동물방역법]

제1장 총칙

제1조 동물방역사업의 관리를 보장하고 동물역병을 예방, 제어, 박멸하며 양식업발전을 촉진시키고 인체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본법을 제정한다.

제2조 본법은 중화인민공화국령역내의 동물방역활동에 적용된다. 입출경동물, 동물산품의 검역은《중화인민공화국 입출경동물검역법》이 적용된다.

제3조 본 법에 제기되는 동물은 가축, 가금과 인공사양, 합법적으로 포획한 기타 동물을 가리킨다.

본 법에 제기되는 동물산품은 동물의 생가죽, 원모, 정액, 배태, 종란 및 가공하지 않은 동체, 지방, 장기, 혈액, 용모, 뼈, 뿔, 발 등을 가리킨다.

본 법에 제기되는 동물역병은 동물전염병, 기생충병을 가리킨다.

본 법에 제기되는 동물방역에는 동물역병의 예방, 제어, 박멸과 동물, 동물산품의 검역이 포함된다.

제4조 동물도살은 본법에 따라 동체, 머리, 발과 내장에 대

하여 검역, 감독을 실시한다. 검역에 합격되어 식품으로 취급 시 위생검수, 감독은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위생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5조 국가에서는 동물역병에 대하여 예방을 위주로 하는 방침을 실행한다.

제6조 국무원 축목수의행정관리부에서 전국의 동물방역 사업을 주관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축목수의행정관리부에서 본 행정구역내의 동물방역사업을 주관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에 소속된 동물방역감독기관에서 동물방역과 동물방역감독을 실시한다. 군대의 동물방역감독기관에서 군대현역동물 및 군대에서 사양하는 사용동물의 방역사업을 책임진다.

제7조 각급 인민정부에서는 동물방역사업에 대한 영도를 보장해야 합니다.

제8조 국가에서는 동물방역의 과학연구를 격려, 지지하고 선진적인 과학연구성과를 보급하며, 동물방역의 과학지식을 보급하며 동물방역수준을 제고시킨다.

제9조 동물방역사업, 동물방역과학연구 중에서 성적을 따내고 공헌을 한 단위와 개인에게는 인민정부나 축목수의행정관리부에서 장려금을 준다.

제2장 동물역병의 예방

제10조 동물역병이 양식업생산과 인체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도에 따라 본법이 규정관리하는 동물역병은 아래와 같은 세부류로 나눈다.

(1) 일류역병 ; 사람과 가축에 엄중히 해를 끼치며 긴급, 엄격한 예방, 제어, 박멸조치를 채택해야 할 것을 가리킨다.

(2) 이류역병 ; 중대한 경제손실을 초래할 수 있으며, 엄격한 제어, 박멸조치를 채택하고 확산을 방지해야 할 것을 가리킨다.

(3) 삼류역병 ; 흔히 보고 다발적이며 중대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으며 제어와 정확할 것을 가리킨다.

위 세류역병의 구체적인 병종류명칭목록은 국무원 축목수의행정관리부에서 규정 및 선포한다.

제11조 국무원 축목수의행정관리부에서는 국가동물역병 예방계획을 제정해야 한다. 국무원 축목수의행정관리부에서는 국내의 동물전염병발생상황과 양식업생산 및 인체건강을 보호하는 수요에 의거하여 제때에 동물역병 예방방법을 규정, 선포해야 한다.

국가에서는 양식업 생산과 인체건강에 엄중히 해를 끼치는 동물역병에 대하여 계획면역제도를 실행하고 강제적 면역을 실시한다.

강제적면역을 실시하는 동물역병 병종류명칭목록은 국무원 축목수의행정관리부에서 규정 및 선포한다.

강제면역이외의 동물역병예방의 실시는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축목수의행정관리부에서 계획을 제정하고 동급인민정부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은 후 실시한다.

제12조 국가에서는 조치를 대어 양식업생산과 인체건강에 엄중히 해를 끼치는 동물역병을 예방, 박멸해야 한다. 동물역병의 예방과 박멸에 수요되는 약품, 생물제품과 유관 물자는 적당한 양의 예비품이 있어야 하며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계획안에 올려야 한다.

제13조 동물방역감독기관은 동물역병예방의 선전교육과 기술지도, 기술훈련, 자문복무에 대해 보장해야 하며 동물역병면역계획을 조직, 실시해야 한다.

향, 민족향, 진의 동물방역조직은 동물방역감독기관의 지도하에 동물역병예방사업을 조직해야 한다.

제14조 동물을 사양, 경영하고 동물산품을 생산, 경영하는 단위와 개인은 본법과 국가 유관 규정에 따라 동물면역의 계획면역, 예방사업을 실시하며 동물방역감독기관의 감시측량과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5조 동물사양장에서는 제때에 동물역병을 박멸해야 한다. 종축, 종금은 국가에서 규정한 건강합격기준에 도달해야 한다.

동물, 동물산품의 운반도구, 깔짚, 포장물은 국무원 축목수의행정관리부에서 규정한 동물방역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전염병에 걸린 동물 및 배설물, 전염병에 걸린 동물의 산품, 병사 혹은 사인불명인 시체는 반드시 국무원 축목수의행정관리부문의 유관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하며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한다.

제17조 동물병원성미생물을 보존, 사용, 운송시 국가에서 규정한 관리제도와 조작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과학연구, 교수, 방역 등 특수 수요에 의해 동물병료(동물시체에서 채집한 샘플)를 운송할 때에는 국가유관규정에 따라 운송해야 한다.

동물역병과학연구에 종사하는 단위는 국가유관규정에 따라 실험동물에 대해 엄격히 관리해야 하며 동물역병의 전파를 방지해야 한다.

제18조 아래와 같은 동물, 동물산품을 경영하는 것을 금지한다.

- (1) 봉쇄한 전염지구내의 발생한 동물역병과 유관되는 것.
- (2) 전염지구내의 감염되기 쉬운 것.
- (3) 법에 따라 검역해야 할 것을 검역하지 않거나 검역에 불합격된 것.

- (4) 전염병에 걸린 것.
- (5) 병사 혹은 사인불명한 것
- (6) 기타 국가 유관 동물방역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것.

제3장 동물역병의 제어와 박멸

제19조 국무원 축목수의행정관리부문에서 전국의 동물전염병발생상황에 대해 통일적으로 관리, 선포하며 수요에 따라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축목수의행정관리부문에 권한을 부여하여 본 행정구역내의 동물전염병발생상황을 선포할 수 있다.

제20조 어느 단위나 개인은 물론하고 역병 혹은 의심스러운 동물을 발견했을 때 응당 제때에 당지 동물방역감독기관에 보고해야 하며 동물방역감독기관에서는 신속히 조치를 채택해야 하고 국가 유관 규정에 따라 상급에 보고해야 한다.

어떠한 단위나 개인이든지 동물전염병발생상황에 대해 속이거나 허위보고 하거나 다른 사람이 보고하는 것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

제21조 제일류 동물역병이 발생했을 경우 당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축목수의행정관리부문에서는 즉시 사람을 현장에 파견하여 전염지점, 전염지구, 위협받는 지구 등을 구분하고, 병료를 채집하여 전염병의 근원을 조사하며, 제때에 동급 인민정부에 서면으로 보고해서 전염지구에 대한 봉쇄를 실시할 것을 결정하며, 전염병발생상황에 대하여 차례로 국무원 축목수의행정관리부문에 보고해야 한다.

현급이상 지방인민정부에서는 즉시 유관부문과 단위를 조직하여 격리, 살포, 소각, 소독, 긴급면역접종 등 강제적 제어, 박멸조치를 채택해야 하며 신속히 역병을 박멸하고 인접지구에 통보해야 한다.

봉쇄기간에 전염병에 걸린 동물 및 의심스러운 동물과 동물산품이 전염지구를 빠져나가는 것을 금지하며 비전염지구 동물이 전염지구에 들어오는 것을 금지하며, 동물역병을 박멸하는 수요에 따라 봉쇄구역을 출입하는 인원, 운반도구 및 유관 물품에 대하여 소독과 기타 제한성조치를 채택해야 한다.

전염지구범위가 두개 이상 행정구역을 포함할 경우 유관 행정구역의 공동한 상급 인민정부가 역구에 대한 봉쇄를 결정하거나 각 유관 행정구역의 상급 인민정부가 공동으로 역구에 대한 봉쇄를 결정한다.

제22조 이류동물역병이 발생했을 경우 당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축목수의행정관리부문에서 전염지점, 전염지구, 위협받는 지구를 확정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에서는 수요에 따라 유관부문과 단위를 조직하여 격리, 살포, 소각, 소독, 긴급면역접종, 감염되기 쉬운 동물, 동물산품 및 유관 물품출입을 제한하는 등 제어, 박멸조치를 채택해야 한다.

제23조 전염지점, 전염지구, 위협받는 지구와 전염지구에 대한 봉쇄제거는 원 결정기관에서 선포한다.

제24조 삼류동물역병이 발생했을 경우 현급, 항급 인민정부에서는 동물역병예방계획과 국무원 축목수의행정관리부문의 유관규정에 따라 방지와 정화를 조직해야 한다.

제25조 이류, 삼류동물역병이 폭발성으로 전파될 경우 본 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26조 중대한 동물역병을 제어, 박멸하기 위하여 동물방역감독기관에서는 사람을 파견하여 법에 따라 설립된 당지 현존 검사참에 가서 감독검사임무를 집행하며, 필요시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비준을 받고 임시적인 동물방역감독검사참을 설립하여 감독검사임무를 집행할 수 있다.

제27조 사람과 가축이 동시에 역병에 걸렸을 경우 유관 축목수의행정관리부문에서는 위생행정부문 및 유관단위와 호상 전염병발생상황을 통보해야 한다. 축목수의행정관리부문, 위생행정부문 및 유관 단위에서는 응당 제어, 박멸조치를 채택해야 한다.

제28조 전염지구내의 유관단위와 개인은 반드시 현급 이상 인민정부 및 축목수의행정관리부문에서 법에 따라 결정한 유관 동물역병의 제어, 박멸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29조 동물전염병이 발생했을 경우 항공, 철도, 도로, 수로 등 운수부문에서는 우선전염병발생제어, 박멸하는 인원과 유관 물자를 운송해야 하며 전신부문에서는 제때에 동물전염병발생상황보고를 전달해야 한다.

제4장 동물과 동물산품의 검역

제30조 동물방역감독기관에서는 국가기준과 국무원 축목수의행정관리부문이 규정한 분야기준, 검역관리방법과 검역대상에 의거하여 법에 따라 동물, 동물산품에 대하여 검역을 실시한다.

제31조 동물방역감독기관에서는 동물검역원을 설립하여 구체적인 동물, 동물산품검역을 실시한다. 동물검역원은 응당 상응한 전문기술을 갖추어야 하며 구체적인 자격조건과 자격증서의 발급방법은 국무원 축목수의행정관리부문에서 규정한다.

현급 이상 축목수의행정관리부문에서는 응당 동물검역원에 대한 훈련, 심사, 관리를 보강해야 한다. 동물

검역원은 상응한 자격증서를 받은 후에만이 정식적으로 검역을 할 수 있다.

동물검역원은 응당 검역규정에 따라 검역을 실시하며 검역결과에 대해 책임진다.

제32조 국가에서는 돼지 등 동물에 대해 지정한 장소에서 도살하고 집중검역을 실시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에서 본 행정구역 내에 대해 정점도살, 집중검역을 실시하는 동물종류와 구역범위를 규정하며, 구체적인 도살장은 시(구를 설치하지 않은 시를 포함), 현 인민정부가 유관부문을 조직하여 연구결정한다.

동물방역감독기관에서는 도살장(점)에서 도살한 동물에 대해 검역을 실시하고 동물방역감독기관에서 통일적으로 사용하는 검사필도장을 찍는다. 국무원 축목수의행정관리부문, 상품유통 행정관리부문에서 협상하여 결정한 범위내의 도살장, 육류연합가공장의 도살검역은 국무원의 유관규정에 따라 처리하며 법에 따라 감독을 실시한다.

제33조 농민개인이 자기 스스로 도살하여 사용으로 하는 생돈 등 동물의 검역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에서 관리방법을 제정한다.

제34조 동물방역감독기관에서는 법에 따라 검역을 실시하고 국무원 제정, 물가행정관리부문의 규정에 따라 검역비용을 받으며 기타비용을 받을 수 없고 중복으로 받을 수도 없다.

제35조 동물방역감독기관에서는 경영성활동에 종사할 수 없다.

제36조 국내 타지방에서 수입한 중용동물 및 정액, 배태, 종란은 먼저 당시 동물방역감독기관에 가서 검역심사비준수속을 밟고 검역에 합격되어야 한다.

제37조 인공포획한 역병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야생동물은 반드시 포획당지 혹은 접수지방의 동물방역감독기관의 검역에 합격되어야 팔거나 운송할 수 있다

검역에 합격된 동물, 동물산품은 동물방역감독기관에서 검역증명을 내며 동물산품은 동시에 동물방역감독기관에서 사용하는 표지를 찍거나 봉해야 한다.

검역에 불합격된 동물, 동물산품은 물품주인이 동물검역원의 감독하에 방역소독과 기타 무해화처리를 실시하며 무해화처리를 하지 못할 때는 소각시킨다.

제39조 동물은 검역증명에 근거하여 팔거나 운송, 전람, 연출, 시합에 참가할 수 있다. 동물산품은 검역증명과 검시필표지에 근거하여 팔거나 운송할 수 있다.

제40조 검역증명은 양도, 고치거나 위조할 수 없다.

검역증명의 적식과 관리방법은 국무원 축목수의행정관리부문에서 제정한다.

제5장 동물방역감독

제41조 동물방역감독기관에서 법에 따라 동물방역사업에 대해 감독을 실시한다.

동물방역감독기관에서 감시측량, 감독임무를 집행할 때 동물, 동물산품에 대해 견본을 추출하거나 나중에 검사하거나 추출검사를 하며, 검역증명이 없는 동물, 동물산품에 대해 검사를 보완하거나 다시 검사할 수 있으며, 전염병에 걸린 동물 혹은 의심스러운 동물과 전염병에 걸린 동물산품에 대해 격리, 봉하여 보존하거나 처리할 수 있다.

제42조 철도, 도로, 수로, 항공운수하는 동물, 동물산품은 운송을 위탁하는 사람이 반드시 검역증명을 제공해야 운송을 위탁할 수 있으며 운송맡은 사람은 반드시 검역증명에 근거하여 운송할 수 있다.

동물방역감독기관은 동물, 동물산품의 운송에 대해 법에 따라 감독검사를 실시할 권리가 있다.

제43조 동물방역감독사업인원은 감독검사임무를 집행할 시 응당 증명서를 꺼내보내야 하며 유관 단위와 개인은 지지, 배합해야 한다.

동물방역감독기관 및 인원은 동물방역감독검사를 실시할 때 비용을 받지 못한다.

제44조 동물사양장소, 저장장소, 도살장, 육류연합가공장, 기타정점도살장(점)과 동물산품냉장장소 공정의 장소 선택과 설계는 국무원 축목수의행정관리부문이 규정한 동물방역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45조 동물사양장, 도살장, 육류연합가공장과 기타 정점도살장(점) 등 단위에서 동물사양, 경영과 동물산품생산, 경영활동에 종사할 경우 국무원 축목수의행정관리부문에서 규정한 동물방역조건에 부합되어야 하며 동물방역감독기관의 감독검사를 접수해야 한다.

동물진료활동에 종사할 경우 상응한 전문기술을 갖추어야 하며 축목수의행정관리부문에서 발급한 동물진료허가증이 있어야 한다.

사람과 가축이 동시에 걸리는 전염병이 있는 인원은 직접 동물진료 및 동물사양경영과 동물산품생산, 경영활동에 종사하지 못한다.

제6장 법률책임

제46조 본법을 위반하여 아래와 같은 행위에 속할 때 동물방역감독기관에서 경고를 주며, 거절하여 개정하지

않는 자는 동물방역감독기관에서 법에 따라 대신처리 하며 처리비용은 위법행위인이 책임진다.

- (1) 사양, 경영하는 동물에 대해 동물역병의 강제면역 계획과 국가유관규정에 따라 제때에 면역접종과 소독을 하지 않는 자.
- (2) 동물, 동물산품의 운반도구, 깔짚, 포장물에 대해 국가유관규정에 따라 청결, 소독하지 않는 자
- (3) 국가유관규정에 따라 전염병에 걸린 동물 및 배설물, 전염병에 걸린 동물산품, 병사 혹은 사인불명인 동물시체를 처리하지 않는 자

제47조 본 법 제17조 규정을 위반하여 동물병원성미생물을 보존, 사용, 운송하거나 동물병료를 운송한 자는 동물방역감독기관에서 경고를 주며, 동시에 2천위안 이하의 벌금을 줄 수 있다.

제48조 본 법을 위반하여 아래와 같은 동물, 동물산품을 경영했을 경우 동물방역감독기관에서 책임지고 경영을 정지하도록 명령하며, 즉시 효과적인 조치를 채택하여 이미 판 동물, 동물산품을 회수하며, 위법소득과 아직 팔지않은 동물, 동물산품을 몰수하고 위법소득의 5배 이하의 벌금을 할 수 있다.

- (1) 봉쇄한 전염지구내의 동물역병이 발생한 것과 유관되는 것
- (2) 전염지구내의 감염되기 쉬운 것
- (3) 법에 따라 검역해야 하며 검역에 불합격된 것
- (4) 전염병에 걸린 것
- (5) 병사 혹은 사인불명한 것
- (6) 기타 국가 유관 동물방역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것

제49조 본 법을 위반하고 법에 따라 응당 검역해야 하는데 검역증명이 없는 동물, 동물산품을 경영했을 경우 동물방역감독기관에서 경영을 정지하도록 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한다. 아직 팔지 않은 동물, 동물산품에 대해 법에 따라 보충검역을 하며 본 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50조 본 법 제42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검역증명이 없이 동물, 동물산품을 운송했을 경우 동물방역감독기관에서 경고를 주고 개정하도록 하며, 운송을 위탁한 자와 운송을 맡은 자에 대해 각 운송비용의 3배 이하의 벌금을 할 수 있다.

제51조 검역증명을 양도, 고치거나 위조한 자는 동물방역 감독기관에서 위법소득을 몰수하며 검역증명을 접수한다. 검역증명을 양도, 고친 자는 동시에 2천원 이상 5천원 이하의 벌금을 할 수 있으며 위법소득이 5천원을 초과할 때 동시에 위법소득의 1배 이상 3배 이하의

벌금을 할 수 있다. 검역증명을 위조한 자는 동시에 1만원 이상 3만원 이하의 벌금을 할 수 있으며 위법소득이 3만원을 초과할 때 동시에 위법소득의 1배 이상 3배 이하의 벌금을 할 수 있다. 범죄를 구성했을 때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묻는다.

제52조 본 법 제15조 제1항 규정을 위반하여 동물사양, 경영과 동물산품생산, 경영활동에 종사한 단위의 동물방역조건이 규정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동물방역감독 기관에서 경고를 주고 개정하도록 명령하며 거절하여 개정하지 않을 때 동시에 1만원 이상 3만원 이하의 벌금을 한다.

제53조 본 법을 위반하여 단위에서 동물전염병발생상황에 대해 속이거나 허위 보고하거나 다른 사람이 보고하는 것을 저해했을 경우 동물방역감독기관에서 경고를 주며 동시에 2천원 이상 5천원 이하의 벌금을 하며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책임자는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준다.

제54조 본 법규정을 위반하고 검역을 도피하여 중대한 동물전염병을 일으켜 양식업생산이 중대한 손실을 입거나 인체건강에 엄중히 해를 끼쳤을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구한다.

제55조 동물검역원이 본 법 규정을 위반하여 검역을 거치지 않거나 검역에 불합격한 동물, 동물산품에 대해 검역증명을 내 주고 검사필도장을 찍어 주었을 경우 소재 단위 혹은 상급주관기관에서 과실기록 혹은 동물검역원자격을 취소하는 처분을 주며, 위법사항이 엄중할 경우 해고처분을 준다.

앞에서 규정한 위법행위가 유관 당사인에게 손해를 주었을 경우 동물검역원 소재단위에서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제56조 동물방역감독사업인원이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사사로운 일에 얽매어 불법행위를 하거나, 전염병발생상황보고를 속이거나, 오래 끌어 기회를 놓치거나, 검역결과를 위조하여 범죄를 구성했을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구하며, 아직 범죄를 구성하지 않았을 경우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준다.

제57조 동물방역감독사업인원이 법에 따라 직무를 집행하는 것을 저해하여 범죄를 구성했을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구하며, 아직 범죄를 구성하지 않았을 경우 법에 따라 치안관리 처벌을 준다.

제7장 부 칙

제58조 본 법은 1998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기타 문의 : 011-672-3564)